

## 타행출금 자동이체 약관

### 제1조 (타행출금 자동이체 신청)

신청인(예금주)가 타행출금 자동이체를 최초 신청 시에는 거래인감은 타행의 출금계좌 인감과 동일한 인감이어야 한다.

또한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예금주가 그 사실을 확인 동의하여야 하며, 그 확인/동의의 표시로 거래인감을 날인하고 예금주의 통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2조 (타행출금 자동이체 방법)

① 은행은 신청인(예금주)의 타행출금 자동이체 신청에 따라 지정출금일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별도의 통지 없이 신청인의 지정출금계좌에서 출금이체하여 지정 입금계좌로 이체한다.

② 출금이체를 위하여 지정출금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통장, 수표, 지급청구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할 수 있다.

③ 출금이체금액은 해당 지정출금일 은행영업시간내에 입금된 예금 (지정출금일에 입금된 타점권은 제외)에 한하여 출금처리 된다.

### 제3조 (지급 자금부족 때의 처리)

이체 지정일에 지정 이체출금 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지정 출금일 현재 청구 금액 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 제한 또는 약정 대출의 연체 등으로 이체출금이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모두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 제4조 (여러 건의 이체 처리)

지정 출금일에 동일한 수종의 출금이체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우선순위는 지정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 (신청내용의 변경 해지신고)

예금주가 신청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체 지정일 전 15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신고해야 한다.

### 제6조 (준 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은행의 예금거래기본약관, 관련예금 및 신탁약관, 은행내규 등을 준용한다.